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20. 10. 28. ~ 2020. 11. 10.)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20 - 99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
2020 - 100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0 -10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20
2020 -10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	25
2020 - 103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심의안	31
2020 - 104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6
2020 -10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43
2020 - 106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55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0-99
----------	---------

제출일자 : 2020.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가입)코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2. 주요내용

가. 명칭(안 제1조)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나. 기능(안 제4조)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구성(안 제5조)

-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붙임 2 : 36개 자치단체 구성

라. 회의 및 의결(안 제9조)

- 정기회의 : 연 1회
-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마. 사무국(안 제13조)

-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바. 재원(안 제16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 연 회비

가.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 소요예산 : 300만원(협의회 부담금)

제정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2차 개정 : 2020년 1월 31일

3차 개정 : 2020년 3월 2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0. 3. 25.>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시행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6.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신설 2020. 3. 25.>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1. 31.>

②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로 하고, 선거 또는 업무대행 등으로 그 지위가 승계될 경우 승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5조의1(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은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회원가입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5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의 탈퇴는 “별지2” 서식에 의하여,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0. 1. 31.>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에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5조의1제1항에 의한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 31.>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나 업무담당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합의 선출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 31.>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를 지명한다.
 2. 회장은 회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0. 1. 31.>
 - ⑤ 감사는 협의회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 <개정 2020. 1. 31.>
-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을 관장한다. <개정 2020. 1. 31.>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삭제 <2019. 1. 19.>

③ 임원의 임기는 단체장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0. 1. 31.>

④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임기는 지명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신설 2020. 1. 31.>

제 4 장 회 의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 1. 31.>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13조의1(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 ② 협의회 사무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9.]

제 6 장 자 문

제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1. 자문위원 구성은 10명 내외로 한다. <신설 2020. 1. 31.>
- 2.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에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특별회원) ① 본 협의회에 취지에 찬동하는 유관기관은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금액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신설 2020. 3. 25.>

제 7 장 재 정

제16조(재원) ① 협의회에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 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연 회비

가.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 2. 특별회비 <개정 2019. 1. 19.>
-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제17조(관리)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회계연도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18조(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은 다음연도 첫 번째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한다.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본청(고문),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도봉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본청(고문), 대덕구, 유성구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여주시, 포천시, 구리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본청(고문),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고성군, 거제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0 -100

제출일자 : 2020.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위 치 :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시설개요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1,500.44㎡	지상2층 / 774.38㎡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4동 / 282.74㎡
근무인원	9명	4명	1명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화장실	1층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3층	지도자숙소(5실)	옥상
		우주체험관, 4D영상관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천체관측관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4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나. 현 위탁비 지원 현황

시 설 명	내 역
월성청소년수련원	배치지도사 1명 인건비 22,968천원 지원 (국비 10,938, 군비 12,030)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비 230,000천원 지원(군비)
거창국민여가캠핑장	대부료 8,980천원 징수

다.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현황

시설명	위탁 현황		기간
월성청소년수련원	최초위탁	2000. 12. 28. ~ 2003. 12. 27.	(3년간)
	1차 계약갱신	2003. 12. 28. ~ 2006. 12. 31.	(3년 4일)
	2차 계약갱신	2007. 1. 1. ~ 2009. 12. 31.	(3년간)
	3차 계약갱신	2009. 1. 1. ~ 2012. 12. 31.	(3년간)
	4차 계약갱신	2013. 1. 1. ~ 2015. 12. 31.	(3년간)
	5차 계약갱신	2016. 1. 1. ~ 2019. 12. 31.	(4년간)
	6차 계약갱신	2020. 1. 1. ~ 2020. 12. 31.	(1년간)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최초위탁	2014. 3. 3. ~ 2016. 12. 31.	(2년 9개월)
	1차 계약갱신	2017. 1. 1. ~ 2020. 12. 31.	(4년간)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최초위탁	2014. 6. 12. ~ 2016. 12. 31.	(2년 6개월)
	1차 계약갱신	2017. 1. 1. ~ 2020. 12. 31.	(4년간)

라. 위탁사무 및 조건

○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연 2회(연11,000천원) 거창군에 납부
- ※ 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일까지(5년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공개모집 시 지원단체 없으면 위원회 심의 후 현 수탁기관 재연장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청소년활동시설을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나. 향후계획

○ 공개모집의 경우

- 2020. 11월 : 군의회 동의
- 2020. 11월 : 공개모집 공고
- 2020. 11월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20. 12월 : 수탁자 선정 발표
- 2020.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계약갱신의 경우(공개모집 후 지원단체 없을 시 위원회 심의 후 현 수탁기관 재연장)

- 2020. 11월 : 군의회 동의
- 2020. 11월중 : 재위탁 신청서 접수
(신청서, 청소년단체신고필증,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종사자배치계획, 장비보유현황 등)
- 2020. 11월 :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 2020.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참 고 자 료

청소년활동시설 위탁운영 근거법령 및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I 최근 3년 이용현황 및 수입지출현황[요약]

○ 월성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

(단위 : 원, 명)

년도	수입	지출	이용현황			
합 계	1,617,012,535	1,531,997,216	소계	초등	중·고등	성인
			30,211	3,625	22,818	3,768
2018년	580,132,059	576,283,664	15,005	2,422	11,427	1,156
2019년	689,185,742	684,560,078	14,890	887	11,391	2,612
2020년 9월	347,694,734	271,153,474	316	316	0	0

※ 배치지도사 1명 인건비 22,968,000원 지원(국비 10,938,000원, 군비 12,030,000원)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이용현황

(단위 : 원, 명)

년도	수입	지출	이용현황		
합 계	138,703,606	607,716,655	소계	입장객	체험인원
			44,265	23,574	20,691
2018년	72,000,061	220,437,219	22,554	11,656	10,898
2019년	58,326,045	227,111,638	20,329	10,981	9,348
2020년 9월	8,377,500	160,167,798	4,402	1,880	2,522

※ 운영비 230,000,000원 지원(군비) / 수입 전액 거창군 세입처리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이용현황

(단위 : 원, 명)

년도	수입	지출	이용현황				
합 계	113,464,000	195,755,567	소계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	일반데크
			7,721	2,152	1,874	2,211	1,484
2018년	45,837,000	71,247,806	3,092	900	838	858	496
2019년	34,490,000	70,030,485	2,284	714	736	462	372
2020년 9월	33,137,000	54,477,276	2,345	538	300	891	616

※ 대부료 연 8,980,000원 징수

II 최근 3년 이용현황 및 수입지출현황[세부]

□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2018년	15,005	2,422	11,427	1,156
2019년	14,890	887	11,391	2,612
2020년 9월	316	316	0	0
계	30,211	3,625	22,818	3,768

○ 수입현황

(단위 : 원)

연도	계	수련	사업비	차입	기타수입
2018년	580,132,059	433,695,803	41,712,000	61,300,000	43,424,256
2019년	689,185,742	438,113,681	41,460,000	120,000,000	89,612,061
2020년 9월	347,694,734	5,210,000	123,320,000	100,000,000	119,164,734
계	1,617,012,535	877,019,484	206,492,000	281,300,000	252,201,051

○ 지출현황

(단위 : 원)

연도	계	인건비	시설보수 및 유지비	공공 운영비	차입금 상환	사업 운영비
2018년	576,283,664	176,075,177	34,568,044	75,478,099	68,000,000	222,162,344
2019년	684,560,078	223,515,565	38,322,830	86,319,166	120,000,000	216,402,517
2020년 9월	271,153,474	143,779,707	41,141,840	79,535,797	0	6,696,130
계	1,531,997,216	543,370,449	114,032,714	241,333,062	188,000,000	445,260,991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관람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입장객	체험인원					
			계	4D 영상관	가변 중력	평행 감각	월면 걷기	토요 야간
2018년	22,554	11,656	10,898	7,994	7,604	7,474	2,904	514
2019년	20,329	10,981	9,348	6,758	5,293	5,327	2,590	452
2020년9월	4,402	1,880	2522	1101	661	668	50	42
계	73,949	24,517	49,432	15,853	13,558	13,469	5,544	1,008

○ 수입현황

(단위:원)

연도	실입금액(a)	감면액(b)	카드수수료(c)	총수입 (a+b+c)
2018년	55,074,450	16,545,050	380,561	72,000,061
2019년	40,112,500	17,768,000	445,545	58,326,045
2020년 9월	8,279,958	32,000	65,542	8,377,500
계	103,466,908	34,345,050	891,648	138,703,606

○ 지출현황

(단위:원)

연도	인건비	공과금	시설관리비	프로그램비	계
2018년	104,401,455	21,745,770	68,790,000	25,499,994	220,437,219
2019년	137,639,670	25,149,169	41,323,629	22,999,170	227,111,638
2020년 9월	105,763,190	21,675,390	26,288,888	6,440,330	160,167,798
계	347,804,315	68,570,329	136,402,517	54,939,494	607,716,655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 이용 및 수입현황

구분		계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	일반데크
2018년	이용인원(명)	3,092	900	838	858	496
	수입액(천원)	45,837	19,074	18,645	5,852	2,266
2019년	이용인원(명)	2,284	714	736	462	372
	수입액(천원)	34,490	16,302	13,233	3,179	1,776
2020년 9월	이용인원(명)	2,345	538	300	891	616
	수입액(천원)	33,137	14,135	9,526	6,528	2,948
계	이용인원(명)	7,721	2,152	1,874	2,211	1,484
	수입액(천원)	113,464	49,511	41,404	15,559	6,990

○ 지출현황

(단위 : 원)

연도	계	인건비	시설보수 및 유지	운영비
2018년	71,247,806	36,078,250	15,084,510	20,085,046
2019년	70,030,485	35,245,210	10,770,786	24,014,489
2020년 9월	54,477,276	26,520,740	7,819,890	20,136,646
계	195,755,567	97,844,200	33,675,186	64,236,18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의안
번호

2020-101

제출일자 : 2020.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665,000천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1년	665	665	665			665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

나.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의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1

4.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2

관 계 법 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인구교육과) (시행일 : 2019.04.03)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19.04.03 조례 제24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삭제<2019.4.3.>

제5조 삭제<2019.4.3.>

제6조 삭제<2019.4.3.>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2019.4.3.>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부칙(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5. 12. 16.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인원현황 (‘20.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0명		17명		
임 원 (‘20. 9.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구○○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前) 민주평통회장		2018.12.03. ~ 2020.12.02.		
	비상임이사	정○○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	前)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2019.12.26. ~ 2021.12.25.		
		이○○	前) 거창교육지원청 과장		2019.12.26. ~ 2021.12.25.		
		구○○	(사)한농연 거창군연합회장		2019.12.26. ~ 2021.12.25.		
		오○○	前) 거창중학교 교장		2018.12.03. ~ 2020.12.02.		
		최○○	새마을지회장		2018.12.03. ~ 2020.12.02.		
		백○○	거창한뉴스 대표		2018.12.03. ~ 2020.12.02.		
		정○○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019.12.26. ~ 2021.12.25.		
		백○○	거창농산 대표		2019.12.26. ~ 2021.12.25.		
		송○○	거창군이장자울협의회회장		2019.12.26. ~ 2021.12.25.		
		김○○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		2019.12.26. ~ 2021.12.25.		
		이○○	(사)거창시장번영회장		2019.12.26. ~ 2021.12.25.		
		백○○	前) 교장		2019.12.26. ~ 2021.12.25.		
	감 사	유○○	푸른산내들 이사		2019.12.26. ~ 2021.12.25.		
		정○○	대경회계사무소 대표		2019.12.26. ~ 2021.12.25.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00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086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0,649 (자산 총액)
	예산액 ²⁾	11,187	11,334	11,464		부채	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665	665	665		자본 ¹⁾	10,64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87				1,075		112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안
번호

2020-102

제출일자 : 2020.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 사 업 비 : 3,486천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1년	4,038	3,486	3,486			3,486	

- 산출기초 : '19년 결산 보통세 26,822,217천원 $\times$ 1.3/10,000
= 3,486천원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나. 부서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재무 회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관감사 및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성이 확보됨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내지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출연기관 현황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 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1.1.]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9.8., 일부개정]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 2. 28 설립등기 - 2011. 4. 20 개 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0년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73명		63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0,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2, 사무직22, 시설직1)		10명 (위촉연구원1,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임 원 (2020년 8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부이사장	황 ○ ○	충청남도 논산시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10)	배 ○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김 ○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김 ○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차 ○ ○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정 ○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2020. 2.28. ~ 2021. 2.27.	
		이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20. 2.28. ~ 2021. 2.27.	
		김 ○ ○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20. 2.28. ~ 2021. 2.27.	
		송 ○ ○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20. 2.28. ~ 2021. 2.27.	
		금 ○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0. 2.28. ~ 2021. 2.27.	
	감 사 (2)	김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김 ○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 2. 28. ~ 2021. 2. 27.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0,148 (설립일~2020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7,715 (자산 총액)
	예산액	13,719	13,164	12,378		부채	84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2,102	10,843	11,391		자본	16,86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058(2020. 9. 21.)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확정내역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군에서는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차질없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2021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장(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장(세무과장), 김해시장(세무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장(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세무회계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정관리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담당	세정과장	전결 2020. 9. 24.
협조자			
시행	세정과-11892	(2020. 9. 24.)	접수 재무과-27276 (2020. 9. 24.)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300, 경남도청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4	팩스번호 055-211-3719 / lcw0130@korea.kr	/ 부분공개(5)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으로 문서제출 "문서2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심의안

의안
번호

2020-103

제출일자 : 2020.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843,000,000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1년	691,000,000	843,000,000	843,000,000	-	-	843,000,000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4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나. 부서의견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이후 운영 5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4. 참고사항

- 출연금 개요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시행일 : 2016.11.23.)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연기관 현황 】

거창문화재단

설립근거	법률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례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12.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5명		7명			8명	
임원 (‘19.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現 거창군수			재직기간(2018.7.2~현재)	
	비상임이사	정○○	現 거창군 문화관광과과장			재직기간(2020.7.6~현재)	
		이○○	前 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년(2019.1.18~2021.1.17.)	
		이○○	거창문화원장			2년(2019.1.18~2021.1.17.)	
		민○○	거창예총 회장			2년(2019.1.18~2021.1.17.)	
		박○○	거창전수관장			2년(2019.1.18~2021.1.17.)	
		신○○	거창문화원 감사			2년(2019.1.18~2021.1.17.)	
		곽○○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서예분과위원장			2년(2019.1.18~2021.1.17.)	
		백○○	거창군민의 날 추진위원장			2년(2019.1.18~2021.1.17.)	
		김○○	前 거창문화원 이사			2년(2019.1.18~2021.1.17.)	
		이○○	경남일보 차장			2년(2019.1.18~2021.1.17.)	
		신○○	케이피커뮤니케이션(주) 문화사업국장			2년(2019.1.18~2021.1.17.)	
		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창지회 부회장			2년(2019.1.18~2021.1.17.)	
		정○○	거창미협 前 윤리이사			2년(2019.1.18~2021.1.17.)	
	감사	이○○	現 거창군 재무과장			재직기간(2020.7.6~현재)	
		이○○	세무사			2년(2019.1.18~2021.1.17.)	
주요기능	문화공연 및 전시 기획·운영, 문화아카데미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등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5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168 (2021년 출연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956 (자산 총액)
	예산액 ²⁾	2,053	2,731	3,552		부채	76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1,938	2,557	3,507		자본 ¹⁾	18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241				2,291		-49

참 고 사 항

1 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경상경비-출연금)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장소 : 거창문화재단 일원(거창문화센터)
- 사업비 및 내용

세부사업	사 업 내 용					비고
계 (1,168,000)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 고
	합계	691,000	843,000	152,000		
인건비 (339,196)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 고
	총 계	280,210	339,196	58,986		
	직 원	220,689	218,314	-2,375		자녀학비보조수당 항목 없어짐
	기간제	59,521	120,882	61,361		기간제 2명 증가(당초 2명 ⇒ 현재 4명)
	*직 원 : 4명(문화사업1단장 1, 단원 3) *기간제 : 4명(환경관리 2, 사무보조 1, 공연장보조 1)					
경상경비 (828,804)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비고
	총 계	410,790	503,804	93,014		
	복리후생비	27,400	27,400	-		
	일반운영비	137,490	232,210	94,720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운영비 소요금액 반영 -공연장 무대 청소, 창고임대, 이사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39,651	139,651	-		
	시설유지 관리비	35,000	40,000	5,000		문화센터 화단 및 조경관리비 반영
	회의운영비	13,930	13,543	-387		
	여비교통비	37,319	36,000	-1,319		과다편성분 삭감
	업무추진비	16,000	12,000	-4,000		업무추진비 기준에 따라 편성
	관서업무비	4,000	3,000	-1,000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운영비 증가요인 발생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원금액	544,130	906,300	691,000	843,000	재단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전년대비증감	-	증) 362,170	감) 215,300	증) 152,000	
예산 과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307-03)		출연금(306-01)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0-104
----------	----------

제출일자 : 2020.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에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나. 위탁 참여인원 : 9명(예정)

다. 위탁사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불법주차 계도 업무 수행
-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관리 등 업무수행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라.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마. 수탁자격 : 장애인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관 기관(장애인 단체 등)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필요성

- 직접 운영 시 일자리 참여자 9명(예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는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의 특성으로 위·수탁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

-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나.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 p.83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추진현황

- 군의회 동의안 제출 : 2020. 10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11월
 - ※ 공고기간 : 2020. 11. 9. ~ 11. 23.
- 선정심의회 개최 : 2020. 12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 12월중

라. 소요예산 : 54,750천원(도비 12,096, 군비 42,654)

마.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2021년 장애인일자리자원도자체사업 위탁 추진계획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합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일자리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준법의식 고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12.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모)
- 위탁 참여인원 : 9명(예정)
 - ※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도자체사업과 군비 추가부분에 한하여 위탁 운영
- 사 업 비 : 54,750천원(도비12,096, 군비42,654)
 - 그 간 추진현황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참여기간	비고
주차단속도우미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부	2012. ~ 2018.	공개모집

- '19년도부터 주차단속도우미사업 폐지로 지자체 직접 운영
 - ※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참여자 관리
-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계획

구 분		총 참여인원	국도비 사업	도자체 사업	군비 추가	비 고
총 계		114	98	4	12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31	26	0	5	직접 운영
	시간제	13	11	0	2	
복지 일자리	참여형	70	61	4	5	일부 위탁운영

- 참여대상 :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장애인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자



근무조건

- 근로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업무지원
- 근로조건 및 보수 ※ 보건복지부 복지일자리사업과 동일 지원
 - 근무시간 : 주 14시간이내(월 56시간 이내, 1일 5시간이내)
 - 월보수액 : 월 488,320원(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 1인당 월488,320원, 운영비 월 20,980원
 - ※ 보험료 가입금액에 따라 보수 변경 가능



추진계획

- 위·수탁 동의안 군 의회 제출 : 10월 중
- 수탁기관 공모(공개모집)
 -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 : 11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 12월 말까지
 - 위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① 국가와 지방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p83
 - ① 복지일자리(참여형) : 시·군·구청장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가능
 - 단, 민간 위탁시에는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 기관(장애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 가능



기대효과

- 수탁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 ※ 연간 고용장려금 : 15백만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명이 참여할 경우
- 지자체 직접 운영 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사무실 내 일자리 참여자 9명(예정)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협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위·수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
- ⇒ 위탁기관(거창군) : 사업총괄, 과태료 부과 상습불법주차구역 관리 등
- ⇒ 수탁기관 : 일자리 참여자 근태관리, 급여지급, 불법주차 계도 등
- 일자리 참여사진



담당부서 의견

- 민간 위탁 시 수탁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지원(도자체사업) 민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 「2020년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사업수행기관 ① 복지일자리(참여형) : 시·군·구청장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가능

-단, 민간 위탁시에는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 기관(장애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 가능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의안
번호

2020-105

제출일자 : 2020.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 사 업 비 : 25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0년	250	250	250			25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나. 부서의견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이 올해와 같은 200억원이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동일하게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추후 출연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목표액 확대 등에 대해서는 거창군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변화, 경남 타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함.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4. 참고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공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 8. 7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2명		99명		13명	
임 원 (‘20. 8.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前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			‘18.11.1~’20.10.31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	現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9.4.25~
		김**	現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			‘18.4.24~
		김**	現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19.6.1~’21.5.31
		한**	現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19.6.1~’21.5.31
		김**	現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19.6.1~’21.5.31
		임**	前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19.6.1~’21.5.31
	감 사	장**	現장** 회계사무소대표			‘18.9.1~’20.8.31
	고문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200,07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4,137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예산액 ²⁾	56,740	71,137	88,155		부채
	지자체 지원액 ³⁾	4,123	7,550	9,450		자본 ¹⁾
					248,812 (자산 총액)	
					48,734 (부채 총액)	
					200,07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039			39,626		△ 18,587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거창군)

1. 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비롯,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증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불임과 같이 거창군의 출연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 임 : 거창군 출연금 협조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부장	본부장	이사장	2020. 8. 25.
------	----	-----	-----	--------------

협조자

시행 경영기획 2020-460 (2020. 8. 25.) 접수 경제교통과-94793 (2020. 8. 25.)

우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층(창원컨벤션센터) / <https://gnsinbo.or.kr/>

전화번호 055)715-5143 팩스번호 055)717-0056 / changwoo@gnsinbo.or.kr / 대국민 공개

2021년도 『거창군』 출연금 지원 요청

2021년 거창군 출연금 (5억원) 지원 요청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거창군의 출연금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거창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일금 5억원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I 출연의 필요성

○ 도내 소기업 · 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비중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비중
경남	246,777	218,894	242,275	98.2	1,103,810	429,684	745,135	67.5
거창	4,176	3,792	4,130	98.9	12,838	7,034	11,466	89.3

* 출처 : 「2019 중소기업현황(2017년 기준)」, 중소기업 중앙회

○ 신용보증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86억원	0.79억원	0.98명

* 출처 : 「2019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재단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

- 단기간 보증공급 급증에 따라 경남재단의 운용배수는 전국재단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운용배수 증가추세: ('18년) 6.66배 → ('19년) 7.41배 → ('20.6.30) 10.09배 → (**'20년말 추정**) 12.09배

** 전국평균 8.8배, 운용배수 : 경북>대구>**경남**>대전>충남('20.6.30기준)

- '21년 운용배수도 '20년과 동일하게 한계 운용배수(12배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 출연금 확보가 필요

<참고자료>

운용배수란?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BIS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증기관의 **한계 운용배수**는 12배*로 산정되며, **지역신보의 적정 운용배수는 10배 수준**

※ BIS비율 8%[자기자본/대출자산(위험자산)]의 역수 : $100/8 = 12.5 \approx 12$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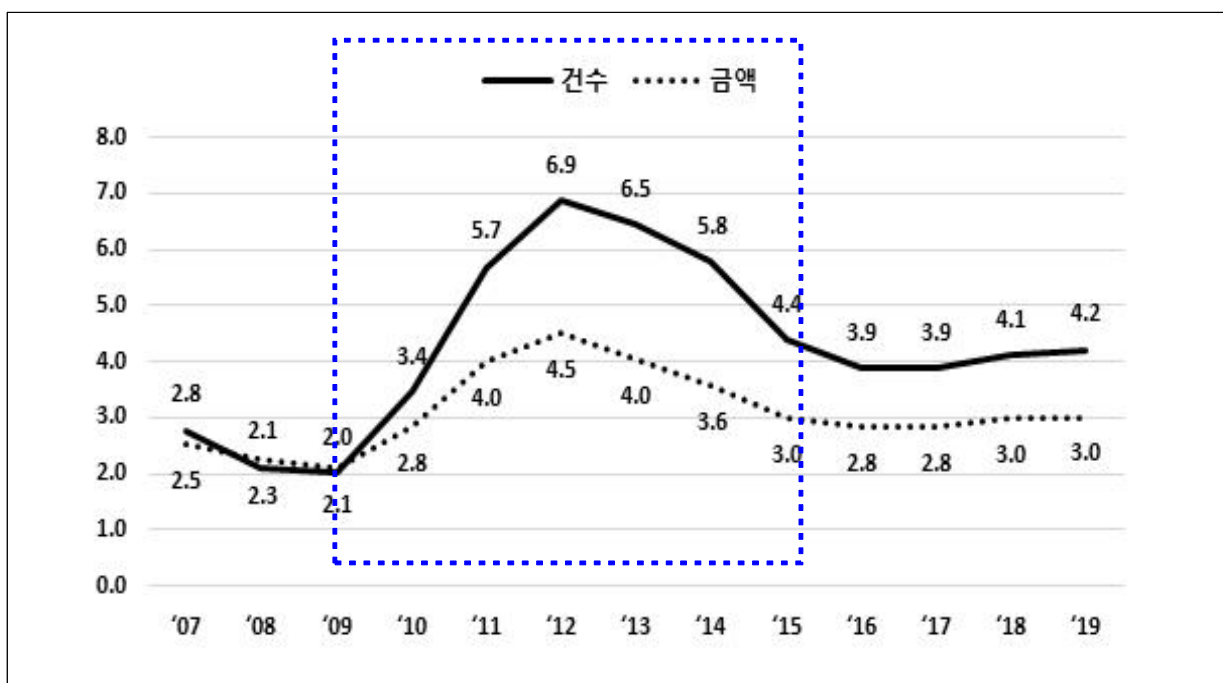
○ 재단 손실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확보 필요

-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등 적극적인 보증공급 확대와 '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보증수요 급증으로 지속적인 손실증가 예상

* 손실금 증가: ('18년) △127.5억원 → ('19년) △185.9억원 → ('20년추정) △396억원 → ('21년추정) △485억원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08~'09년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을 증가한 사례를 볼 때 '21년이후 손실 급증 예상

* 대위변제율(전국재단) : ('09년) 2.08% → ('10년) 2.83% → ('11년) 4.0% → ('12년) 4.49%



II

거창군 신용보증·대위변제 주요현황

○ 거창군 보증공급 현황 (기한연장 포함)

- 재단 설립('96.6) 이후 거창군 소재 기업에 지원된 누적 총보증 금액은 1,669억원
- '20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증지원 대폭 증가

('20.6.30.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2016년	3,042	636	2	1	3,044	637
2017년	904	189	-	-	904	189
2018년	1,068	212	-	-	1,068	212
2019년	1,239	285	-	-	1,239	285
2020년 6월말	1,132	344	4	2	1,136	346
합 계	7,385	1,666	6	3	7,391	1,669

○ 거창군 대위변제발생 현황

- 거창군 소재 기업의 대위변제 누적 금액은 39억원으로 매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으로 향후 지속적 부실 증가 우려

('20.6.30.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2016년	198	19	1	1	199	20
2017년	35	4	-	-	35	4
2018년	43	6	-	-	43	6
2019년	38	6	-	-	38	6
2020년 6월말	21	3	-	-	21	3
합 계	335	38	1	1	336	39

III 출연금 현황

○ 기초지자체 출연금 비중 저조

- 우리재단 출연금에 대한 비중을 볼 때 신용보증으로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영위하는 시·군의 출연금 비중은 6.3%로 저조한 실정

(20.6.30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출 연 금					이월 손익금	계
	정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 등		
금 액	419.8	762.9	168.0	1,214.9	94.7	△368.8	2,291.5
구성비	15.8%	28.7%	6.3%	45.7%	3.5%	-	100%

○ 시·군별 출연금 현황

(20.6.30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합천군	의령군	합 계
'20 년	11. 0	4. 0	4. 0	3. 5	3. 5	3. 0	2. 5	2. 0	2. 5	2. 5	1. 5	1. 5	1. 5	1. 5	1. 0	1. 5	1. 5	1. 0	49. 5
누 적	34. 0	14. 0	13. 5	13. 5	17. 5	10. 0	8. 5	5. 0	8. 5	7. 5	5. 5	5. 5	4. 5	4. 5	4. 0	3. 5	4. 5	4. 0	16. 8

* '20 하반기 추가출연금 요청 (거창군 1억5천만원)

○ 전국 광역지자체 출연금 중 시·군 출연금비중 하위수준

- 유사한 수준의 타 재단 비교에서도 우리재단의 시군 출연금 비중은 평균(19.7%) 이하의 매우 저조한 수준(6.3%)을 보이고 있음

(‘20.06.30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총출연금	광역시·군		시·군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경남	2,660	763	28.7%	168	6.3%	1,729	65.0%
강원	1,931	782	40.5%	72	3.7%	1,077	55.8%
경기	13,715	3,428	25.0%	3,838	28.0%	6,449	47.0%
경북	2,685	586	21.8%	722	26.9%	1,377	51.3%
전남	2,084	670	32.1%	143	6.9%	1,271	61.0%
전북	2,115	638	30.2%	272	12.9%	1,205	57.0%
충남	2,478	614	24.8%	338	13.6%	1,526	61.6%
충북	1,665	329	19.8%	239	14.4%	1,097	65.9%
합계	29,333	7,810	26.6%	5,792	19.7%	15,731	53.6%

2021년 거창군 출연 요청금 산정기준

○ 출연금액 산출

- 보증잔액 증감, 대위변제 순증금액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要 출연금을 산정한 후 조정을 통해 최종 출연요청 금액 결정

○ 거창군 출연산정 참조자료

(단위 : 백만원)

지역	보증잔액 증가액			대위변제 순증	출연 필요금액			안분차감		2021년 최종 출연 금 산출	2021년 출연금 연계 신규보증 지원규모 (예.소상공인 육성자금)
	2018년 (A)	2019년 (B)	증감 (C)(B-A)		잔액증가 법정비율 (C/15배)	대위변제 (재보증제외) (Dx50%)	소계	경남도 출연	산출 출연금		
합 계	1,340,839	1,484,375	143,737	39,623	9,584	19,732	29,315	8,000	21,313	16,850	202,200
거창군	26,325	32,834	6,509	433	434	217	651	178	473	500	6,000

1) 2021년도 최종 출연금 조정적용 : 산출출연금과 시·군별 출연 연계 소상공인 육성자금(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없을 경우 일반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2) 2021년 출연금 연계 신규보증 지원규모 : '21년 재단의 신규보증공급 계획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 적정 규모 산출

【참고사항】

1. 기본적으로 출연금 대비 보증공급 규모는 법상 15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은행의 BIS비율(8%)을 준용하여 최고 **12배 이내로 운용함이 적정합니다.**
2. 2019년까지 우리재단의 운용배수 여유가 있어 시·군의 이차보전 규모에 대하여 별도 제한 없이 운용하여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으로 운용배수가 급증하여 한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3. 향후 보증운용 전반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권고***를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출연에 따른 연계 보증공급 규모를 **12배 이내로 축소하여** 운용하게 되오니 시·군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출연부 협약보증 운용배수 관련 협조요청」(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0.8.12.)

(‘20.05.08.기준,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현황('20.5.8. 기준)						점유율	추가 출연금	당초 출연금
	대출실행(A)		심사진행중(B)		합계(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4,601	350,051	22,230	454,550	36,831	804,601	100.0%	5,000	5,100
창 원시	4,610	116,756	7,405	163,537	120,15	280,293	34.8%	1,700	1,100
진주시	1,609	33,207	1,931	34,123	3,540	67,330	8.4%	400	400
통영시	481	12,007	1,389	31,910	1,870	43,917	5.5%	300	300
사천시	720	14,455	550	10,142	1,270	24,597	3.1%	150	250
김해시	1,773	43,312	3,515	71,113	5,288	114,425	14.2%	700	550
밀양시	564	15,301	529	12,228	1,093	27,529	3.4%	200	200
거제시	1,296	29,817	2,167	37,183	3,463	67,000	8.3%	400	350
양산시	1,068	24,656	2,015	42,531	3,083	67,187	8.4%	400	350
의령군	51	1,098	122	2,910	173	4,008	0.5%	50	100
함안군	228	5,072	788	14,747	1,016	19,819	2.4%	100	250
창녕군	653	17,382	80	2,031	733	19,413	2.4%	100	150
고성군	255	5,404	574	10,988	829	16,392	2.0%	100	150
남해군	252	5,612	339	4,998	591	10,610	1.3%	50	150
하동군	158	3,256	176	2,807	334	6,063	0.8%	50	150
산청군	99	2,177	127	1,871	226	4,048	0.5%	50	150
함양군	99	2,526	114	2,422	213	4,948	0.6%	50	100
거창군	553	14,746	293	6,716	846	21,462	2.7%	150	250
합천군	132	3,267	116	2,293	248	5,560	0.7%	50	150

* 산정기준 :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실적 점유율에 따라 안분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의안
번호

2020-106

제출일자 : 2020.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1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백만원)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타
2021년	180	180	180	-	-	180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등

나. 부서의견

-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참고자료(거창화강석연구센터 현황)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4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고문 1)
- 직원현황 : 총 5명(센터장 1, 연구직 2, 생산직 2)

성 명	직 책	담 당 업 무	학위/자격
김건기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업무 총괄 / 기술지원	박사/'가'
강무환	선임연구원	시험분석 품질업무 / 법인 운영 / 채석기술관련	석사/'나'
정영일	선임연구원	시험분석 기술업무 / 사업 관리 / 가공기술개발	석사/'나'
조형철	생산/시험팀장	기능석재 공장운영 책임, 품질시험실무 등	학사/'다'
이진호	생산/시험담당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학사/'라'

II

거창화강석 산업현황

□ 석재산업 현황

○ 채석 및 가공업체 현황

- ▶ 종사인구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물류, 유류, 기계, 공구 등 지역경제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개소 / 명 / 백만원)

구 분	계	석산협회	석재조합
업체수	24	6	18
종사자수	253	129	101
매출액 (2019년)	65,366	31,684	33,682
농업조수익 (2019년)	쌀(55,263), 사과(126,072), 딸기(40,082), 한우(121,006)		

※ 비회원사(수가공), 유통업, 중간소매, 석시공 등은 매출액 제외

○ 석재 관급시장 연간 매출 규모(조달청)

- ▶ 관급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거창지역 매출액이 증가

(원석, 인건비, 유류비,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

(단위 : 백만원)

관급시장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국	338,446	314,004	338,487	384,960	374,732	371,758
거 창	35,451	38,870	40,652	38,200	44,364	38,971
거창매출규모	11%	12	12%	10%	12%	10%

※ 관급계약 매출액 기준으로 사급 및 기타 석제품은 제외

Ⅲ

연구센터 주요업무 및 운영계획

□ 2020년도 성과목표 및 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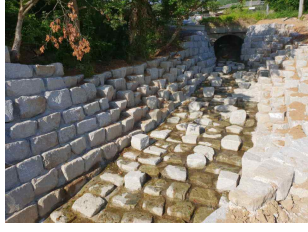
구 분		'20년도 성과 목표	'20년도 실적 (9월말)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15건	25건
	기업샘플/시제품 제작	20건	34건
	원산지 검증 지원	5건	2건
	석재 시험분석 지원	300건	529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4건	5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20건	22건
	홍보/마케팅 지원	10건	20건
학술연구용역	성산일출봉 학술조사 외	5건	6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2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150,000천원	152,634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109,000천원	66,630천원
	학술연구용역	85,000천원	104,147천원
	기타 수익금	-	489천원
	합 계	344,000천원	323,898천원

□ 기업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업무지원

○ 기업지원 및 기술개발 실적

계	특허	실용신안	상표
42건	27건	1건	4건

○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화 상용화 실적

구분	개발제품	생산업체	매출액 (백만원)	제품특징	지원내용	제품사진
계			11,517			
1	굴림 보도판석	영석 대리석 (가공)	328	폐자재 활용 굴림판	- 제조 및 가공기술 - 제조방법 특허 - 조달청 제품등록	
2	문양 교명주	위천석재 (가공)	50	디자인 접목 교명주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디자인개발	
3	조경석	거창돌통제원(석산) 창동통제원(진)	10,989	가 조경석	- 제조 및 품질규격 - 품질관리 특허 - 조달청 제품화	
4	성곽석	거창돌통제원(석산)	150	규격 전석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 및 시공방법	
5	무광택 판재	한국석공업협조합	-	미끄럼 방지 (판석 전문업체)	- 제조 및 가공기술 - 제조방법 특허 - 규격 및 시험방법 - 조달청 '혼드' 등록	

※ 매출액은 2019년도 기준

○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화 개발 실적

연번	개발제품	특징	지원내용	제품사진
1	교통안내경계석 (하나석재) (가공기술/특허) (디자인/제품개발)	시인성 확 보 경계석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디자인 개발 - 조달우수제품신청	
2	골다듬 판석 (원광석재) (특허 및 제품개발)	미끄럼 방지 판 석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디자인 개발 - 골다듬 상표등록 - 조달우수제품신청	
3	빗살무늬판석 (위천석재)	건축 및 토목용 판 석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디자인 개발 - 조달우수제품준비	

□ 국제공인시험분석기관/단체표준시험기관 운영

○ '13. 4월 국가기술표준원 석재분야 시험기관 지정

○ '15. 4월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시험기관 지정

▶ 전국 석재관련 162개 업체 년 2회 이상 시험분석 업무 지원

○ '20. 7월 국가기술표준원 골재분야 시험기관 지정

○ 거창관내 32개 업체 분석지원 : 분석수수료 50% 할인

구 분	조경석	경계석	판석	기타	합계
전 국	69	57	36	-	162
거창관내	8	14	5	5	32

구 분	2018년	2019년
시험성적서 발급 건수	328건	359건
시험분석수수료 수익금	101,923천원	206,697천원

□ 거창화강석 품질관리 및 수입석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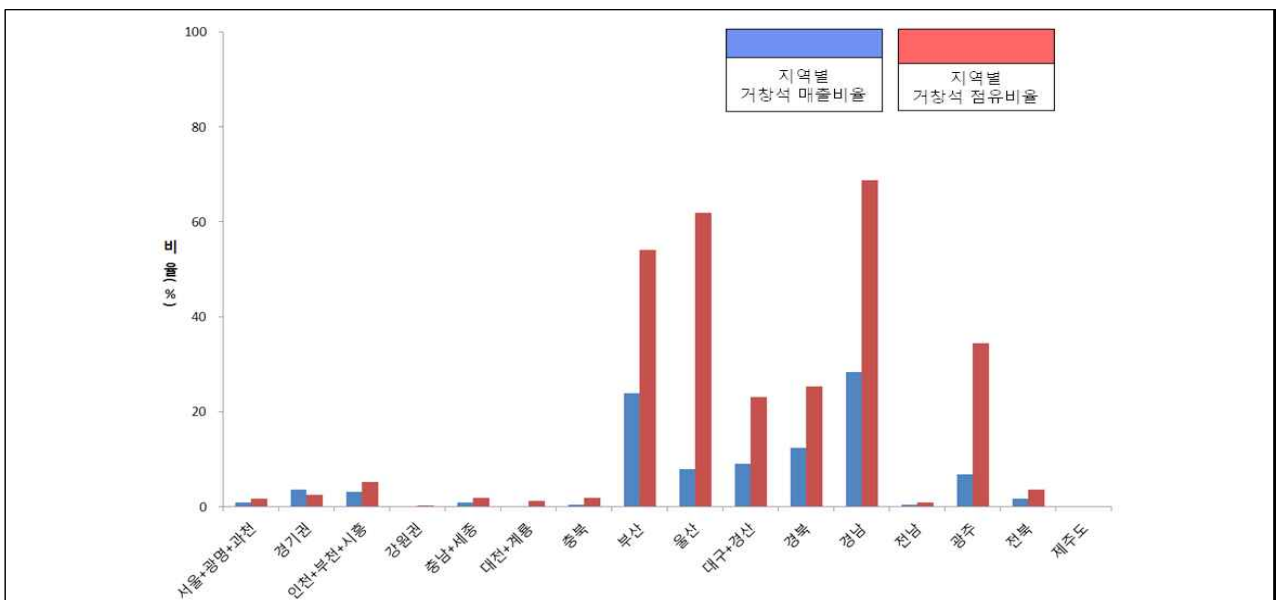
- 석재 원산지 검증 : 부산-울산-경남권 및 대구-경북권
- 울산 “ㄷ” 석재에서 납품된 석재에 대한 원산지 검증 결과
 - ▶ 5개 현장에 대하여 70% 이상 수입석 납품(조달품질원 신고)
 - ▶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85% 이상 확대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6	2017	2018	2019
울산전체 관급물량	1,819	2,067	2,963	3,223	2,958
울산지역 “ㄷ”석재	1,114	19	8	6	0
거창지역 관내업체	520	1,634	2,470	2,221	1,813
타 지역 석재업체	202	414	485	1,005	1,145
합계	1,836	2,067	2,963	3,223	2,958

□ 거창화강석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지역별 거창화강석 판매 비율 및 점유율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
 - : 경계석 관급매출(197억)의 80% 이상이 경상도권에서 이루어 짐
 - : 경상도권에서 거창화강석 점유비율이 평균 50% 정도 형성 중
 - : 경상도권 집중 공략 필요성(홍보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 거창화강석 우수성 홍보 및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홍보

: 지자체, 건축 및 토목 설계사무소 등 수요자를 대상 직·간접적인 홍보

: 라돈 등 석재관련 환경유해성 물질에 대한 품질 신뢰성 확보 및 홍보

거창화강석 홍보 마케팅 실적			
자연 그대로를 담은 친환경 석재 거창화강석 “거창석”을 활용한 건축자재제안   오름 가드 시스템 오름가드시스템  진동식석조자재사 진동식석조자재사  거창화강석		 “라돈 Free 거창화강석” 라돈 안전 이상무 거창화강석은 라돈 안전 이상무 거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지원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유해성 분석지원

: 석재 가공시 발생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

: 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지원 ⇒ 관내 업체 유해성 분석지원

구 분	대 상	구 분	대 상
토양오염공정시험	21개업체 석분	토양용출시험	6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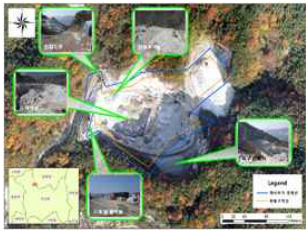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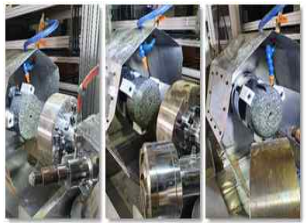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후 처리내역

년도	실 적	내 용	처리량 (m³)
2016	주상면 희랑생활체육공원 성토재 활용 외 1건	저지대 성토	10,841
2017	위천면 당산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3건	저지대 성토	9,155
2018	남상면 대산리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3건	저지대 성토	11,693
2019	마리면 대동리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1건	저지대 성토	3,458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제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수수료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석산인허가관련지원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특허2건출원 준비중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4개업체)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석분활용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문화관광 컨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1건출원 준비중)
	CNC 장비활용 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컬링스톤 상용화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석재표면 처리방법	샘플제작/납품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러쉬 등)

○ 신기술 개발 사업을 통한 주요성과

구분	신기술개발	매출액 (백만원)	지원대상	기술개발 수익사업	제품사진
계		272			
1	석재·골재 품질시험 분 석	202	전국/거창관내 (석산 및 가공)	- 공인시험기관운영 - 석재원산지검증 - 가공조경석형상평가 (특허 1건 등록)	
2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 술	60	거창석산협회	- 석산사면안정성평가 - 채석경제성평가 - 드론을 이용한 사면평가/지형변화 (특허 1건 등록)	
3	문화관광 컨텐츠개발	10	거창석재조합	- 석재활용제품개발 - CNC 시제품제작 - 레이저에칭기술개발 - 컬링스톤/미니컬링	
4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	거창석재조합 (매년분석지원)	- 유해성평가분석 - 재활용 제품개발 (특허 1건 등록) - 석분활용방안(거창군) (특허 1건 출원)	
5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 발	-	거창석산협회 거창석재조합 (기업체공동개발)	- 기업애로사항해결 - 컬러석재기술개발 - 석재표면처리제품 - 석재특화제품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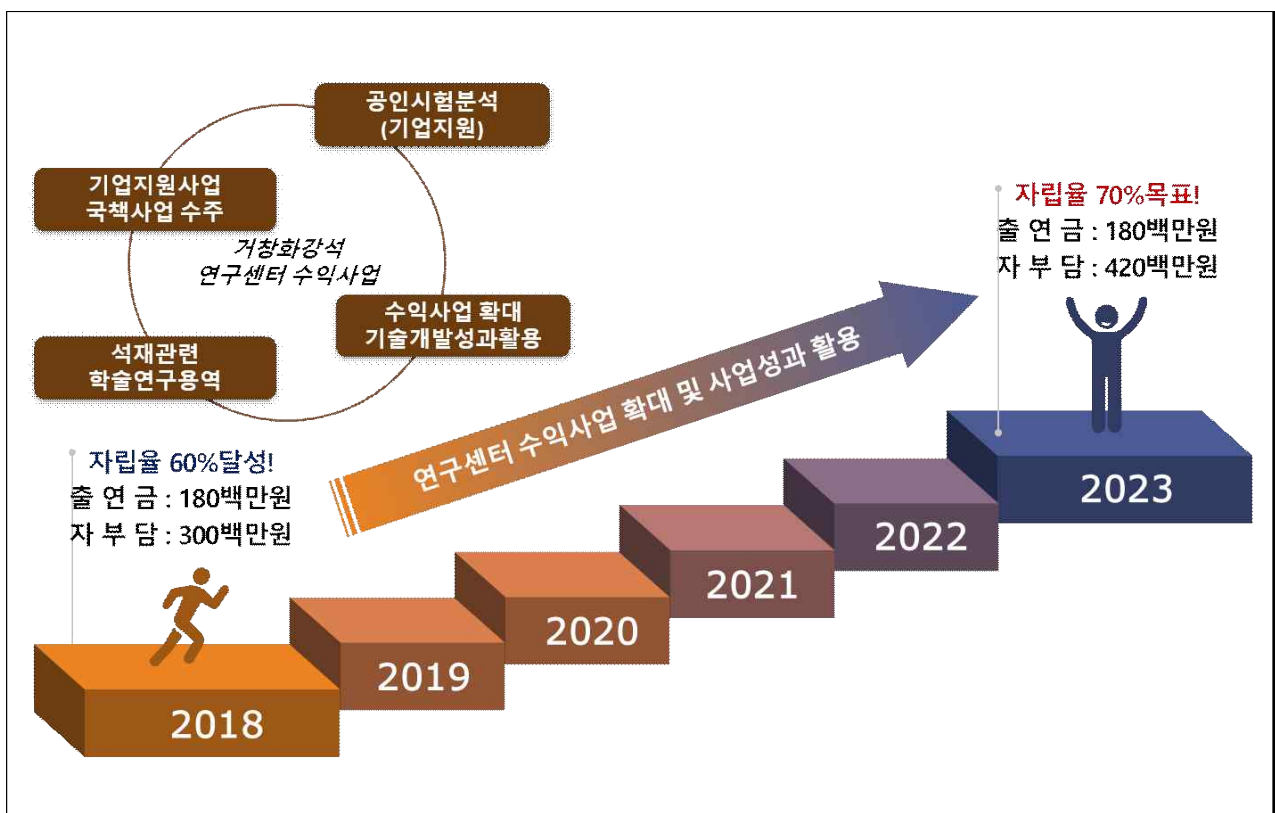
※ 매출액은 2019년도 기준

IV

연구센터 향후 운영계획

□ 연구센터 운영계획

- 연구센터 설립목적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석재관련 기업 지원 및 기업체 연계기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국책사업수주 등을 통한 지원재원 확보,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센터 운영예산은 2011년부터 국비지원에서 군비로 전환되었고, 2013년도에는 군 출연금을 2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2018년에는 1억8천만원으로 축소하였음
- 2015년도부터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를 통해 현재 군비지원 대비 운영예산의 60%를 자체 충당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는 경영자립화를 위해 지속적인 수익사업 확대 및 사업발굴을 통하여, 자립율 70%를 목표로 관리 및 운영할 계획임



[연구센터 운영 및 자립화 계획]

관 계 법 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0.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20.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9. 3. 21 ~ ‘22. 3. 20		
	감사	최○○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9. 3. 21 ~ ‘22.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323 (자산 총액)
	예산액 ²⁾	487	655	735		부채	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00	180	180		자본 ¹⁾	31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74				250		124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